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·출력되었습니다.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15-09-21

부 산 지 방 법 원

제 2 행 정 부

판 결

사 건	2015구합807 자동차세부과처분취소
원 고	A
피 고	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
변 론 종 결	2015. 7. 24.
판 결 선 고	2015. 8. 21.

주 문

1.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.
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청 구 취 지

피고가 2001. 1. 31.부터 2014. 12. 31.까지 원고에 대하여 한 자동차세 등 16,043,5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.

이 유

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, 존재하지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·출력되었습니다.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15-09-21

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(대법원 2006. 9. 28. 선고 2004두5317 판결 등 참조).

그런데 피고가 소송계속 중인 2015. 7. 2.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청구취지 기재 자동차세 등 부과처분을 감액 및 결손 처리하여 직권취소한 사실은 을 제4호증(가지번호 포함)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명백하므로, 이 사건 소는 소멸하고 없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.

따라서 이 사건 소를 각하하고, 소송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가 부담하도록 한다.

재판장 판사 이흥구

판사 인진섭

판사 김두홍